



협력사 행동규범

서 문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이하 “당사”라 칭함)는 세계 여러 국가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협력사와 당사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과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이하“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협력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당사가 협력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당사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협력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2024 년 11 월 27 일

(주)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1. 노동 인권

협력사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강제근로 금지

- 자발적 근로의 권리를 지원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협력사는 강제 근로자, 채무 속박에 의한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2 미성년 근로자 보호

- 아동 근로자 고용은 금지되며, 현지 법령에 따른 최저 연령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실습생 프로그램 운영 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8 세 미만 근로자는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8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매 7 일마다 최소한 1 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 최저 임금, 초과 근로 수당 및 법적 복리후생을 보장하며,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징계 수단으로 임금 삭감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 근로자에게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강압, 욕설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인권 보장 방침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1.6 차별 금지

-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하지 않으며, 채용 및 승진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1.7 법규 준수

-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안전 보건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

-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관리 및 예방적 유지보수,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임신 및 수유기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대피 절차 및 교육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4 유해인자 노출 저감

- 화학물질, 방사선 등 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통해 안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 시설에 대한 교정 등 기술적 통제, 행정적 통제 상기 유해요인들로 안전보건 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5 신체부담 업무

- 반복적 수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2.6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 위험 기계 및 설비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물리적 보호 장치, 연동 장치, 방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2.7 기숙사 및 위생 시설 제공

- 청결한 화장실,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기숙사 운영 시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장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안전 관련 정보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

협력사는 기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온실가스 및 대기 배출물질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취득

- 기업 운영 상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 관리 및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3.2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 오염물질 배출 및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천연자원은 생산프로세스 개선, 유지 관리 강화, 대체 자재,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3 유해물질 관리

-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및 폐기의 안전보장을 위해 식별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3.4 대기오염물질 관리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연소부산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법규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3.5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6 수자원 관리

- 협력사는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 수자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하고, 폐수는 배출 또는 처리 이전에 특성화 및 모니터링 후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3.7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축 과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4. 윤리 경영

협력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4.1 청렴성

- 모든 거래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며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4.2 부당이득 금지

-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 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4.3 정보공개

- 협력사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해당 법규에 따른 정보 공개를 준수해야 합니다.

4.4 지적 재산 보호

- 지적 재산권을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당사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당사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4.5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 협력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업체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6 책임 있는 물자 관리

- 협력사는 하위 공급망과 관련하여 원자재(분쟁광물 등), 반제품, 부품 등과 있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물질의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사용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7 개인정보 보호 노력

- 협력사는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